

# 공립어린이집(미탄·용평보듬이나눔이) 위탁운영 동의안

의안 번호	13
----------	----

제안연월일 : 2022. 9.

제안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- 「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14조(위탁운영)에 의거 평창군 공립 어린이집(미탄·용평보듬이나눔이) 위탁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관련근거

- 영유아보육법 제24조(어린이집 운영기준)
-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(위탁운영), 제15조(수탁자 선정), 제16조(위탁계약)
-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)

## 3. 위탁운영 목적

-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일관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

## 4. 시설현황

(단위 : 명, m<sup>2</sup>)

시설명	현수탁자	위치	아동 정원	아동 현원	교직원	연면적
공립미탄어린이집	장향순	미탄면 미탄문화길 20	36	13	6	281.52
공립용평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	최은순	용평면 새이들길 17	60	50	13	340.89

## 5. 인력관리 현황

(단위 : 명)

시 설 명	계	원장	보육교사	조리사	운전기사
공립미탄어린이집	6	1	3	1	1
공립용평보듬이 나눔어린이집	13	1	10	1	1

## 6. 위탁 현황

시 설 명	수탁자	위탁기간(현재)	원장	비고
공립미탄어린이집	장향순 (개인)	'17. 11. 2. ~ '22. 11. 1. (5년)	장향순	변경위탁
공립용평보듬이 나눔어린이집	최은순 (개인)	'17. 12. 11. ~ '22. 12. 10. (5년)	최은순	변경위탁

## 7. 연간 예산지원 현황(2022년)

(단위 : 천원)

시 설 명	계	보육료	인건비	기타운영비	비고
공립미탄어린이집	155,894	28,065	117,389	10,440	
공립용평보듬이 나눔어린이집	351,840	121,322	204,318	26,200	

## 8. 위탁계획

- 위탁사무 :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운영
- 위탁방법 : 변경위탁
- 위탁기관 :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, 단체(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포함) 또는 개인
- 위탁기간
  - 공립미탄 : 2022. 11. 2. ~ 2027. 11. 1.(5년)
  - 공립용평 : 2022. 12. 11. ~ 2027. 12. 10.(5년)

- 선정방법 : 공개모집 후 평창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사·선정  
 ⇨ 심사결과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·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,  
 70점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

## 9. 위탁조건

- 위탁범위 : 어린이집 운영전반(보육, 인사, 회계, 안전 등) 및 위탁시설 유지·관리
- 예산지원 : 종사자 인건비, 보육료 등  
 ※ 단, 보건복지부 '보육사업지침'의 단가 및 지원 비율에 의함

## 10. 향후 추진일정

-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 : 2022. 9.
- 위탁체 선정 공고 : 2022. 9. ~ 10.
- 평창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 : 2022. 10.
- 위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: 2022. 10.

## 11. 민간 위탁의 효과성 및 경제성

- 보육 및 아동복지 분야에 많은 경험과 경력, 전문적인 지식,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,
- 아동에 대한 보다 일관되고 안정적인 보육, 보육교직원 관리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해 보육사업 전문성 제고에 기여

## 12. 관련자료

- 관계법규 1부. 끝.

## 관계법규 발췌

### □ 영유아보육법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①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

1.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2.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

### □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

제14조(위탁운영)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내 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군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5조(수탁자 선정) ①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.

**제16조(위탁계약)**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,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정한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며,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기간 만료 후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.

## □ **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**

**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**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
2.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
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군의 조사·검사·검정 등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업무로 구분한다.

1. 노인, 장애인, 여성, 아동, 청소년, 노숙인 등 복지시설
2. 환경기초시설
3. 문화·관광·체육시설
4. 공원·녹지시설
5. 보건·건강증진시설
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등 관련 시설
7. 공무원 후생복지시설
8. 그 밖에 1년 이상 위탁기간인 단순 행정관리 시설물